

협약서

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과 (사)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(이하 “양 기관”)는 50+세대의 서울시 50+보람일자리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의 진입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양 기관이 청소년시설 50+지원단 육성을 통해 50+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고 보람일자리 모델을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내용 및 역할)

양 기관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 성실히 협력한다.

1.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
 -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지원
 - 교육진행 및 활동 공간 지원
2. (사)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
 - 참여자 활동관리 및 보수교육 인력지원
 - 프로그램 자문 및 공동운영, 홍보 및 관리

제3조(협약기간)

협약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4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

“양 기관”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은 해지된다.

1. 양 기관이 협약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
2.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1개월이 경과한 경우
3. 단,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협력이 진행중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5조(기타사항)

1.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한 협의에 따르기로 한다.
2. 협약의 증빙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한 후 양 기관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11월 22일



서울특별시
50플러스재단

대표이사 이 경 희



Seoul Youth Center
Association

(사)서울특별시
청소년시설협회

회장 김 영 득

협약서

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과 (사)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(이하 “양 기관”)는 50+세대의 서울시 50+보람일자리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의 진입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양 기관이 청소년시설 50+지원단 육성을 통해 50+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고 보람일자리 모델을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내용 및 역할)

양 기관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 성실히 협력한다.

1.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
 -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지원
 - 교육진행 및 활동 공간 지원
2. (사)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
 - 참여자 활동관리 및 보수교육 인력지원
 - 프로그램 자문 및 공동운영, 홍보 및 관리

제3조(협약기간)

협약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4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

“양 기관”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은 해지된다.

1. 양 기관이 협약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
2.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1개월이 경과한 경우
3. 단,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협력이 진행중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5조(기타사항)

1.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한 협의에 따르기로 한다.
2. 협약의 증빙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한 후 양 기관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11월 22일



Seoul Youth Center
Association

(사)서울특별시
청소년시설협회

회장 김 영 득



서울특별시
50플러스재단

대표이사 이 경 희

협약서

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과 쪽방상담소 연합회(이하 “양 기관”)는 50+세대의 서울시 50+보람일자리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의 진입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양 기관이 쪽방상담소지원단 육성을 통해 50+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고 보람일자리 모델을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내용 및 역할)

양 기관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 성실히 협력한다.

1.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
 -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지원
 - 교육진행 및 활동 공간 지원
2. 쪽방상담소 연합회(남대문, 돈의동, 동대문, 서울역, 영등포)
 - 참여자 활동관리 및 보수교육 인력지원
 - 프로그램 자문 및 공동운영, 홍보 및 관리

제3조(협약기간)

협약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4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

“양 기관”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은 해지된다.

1. 양 기관이 협약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
2.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1개월이 경과한 경우
3. 단,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협력에 진행중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5조(기타사항)

1.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한 협의에 따르기로 한다.
2. 협약의 증빙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한 후 양 기관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11월 22일



서울특별시
50플러스재단

대표이사 이 경 희

쪽방상담소 연합회

(남대문 돈의동 동대문 서울역 영등포)
회 장

협약서

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과 쪽방상담소 연합회(이하 “양 기관”)는 50+세대의 서울시 50+보람일자리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의 진입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양 기관이 쪽방상담소지원단 육성을 통해 50+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고 보람일자리 모델을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내용 및 역할)

양 기관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 성실히 협력한다.

1.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
 -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지원
 - 교육진행 및 활동 공간 지원
2. 쪽방상담소 연합회(남대문, 돈의동, 동대문, 서울역, 영등포)
 - 참여자 활동관리 및 보수교육 인력지원
 - 프로그램 자문 및 공동운영, 홍보 및 관리

제3조(협약기간)

협약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4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

“양 기관”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은 해지된다.

1. 양 기관이 협약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
2.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1개월이 경과한 경우
3. 단,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협력이 진행중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5조(기타사항)

1.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한 협의에 따르기로 한다.
2. 협약의 증빙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한 후 양 기관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11월 22일

쪽방상담소 연합회

(남대문 돈의동 동대문 서울역 영등포)

회 장



서울특별시
50플러스재단

대표이사 이 경 희

협약서

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과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(이하 “양 기관”)은 50+세대의 서울시 50+보람일자리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의 진입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양 기관이 행복도시락 나눔지원단 육성을 통해 50+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고 보람일자리 모델을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내용 및 역할)

양 기관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 성실히 협력한다.

1.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
 -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지원
 - 교육진행 및 활동 공간 지원
2.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
 - 참여자 활동관리 및 보수교육 인력지원
 - 프로그램 자문 및 공동운영, 홍보 및 관리

제3조(협약기간)

협약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4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

“양 기관”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은 해지된다.

1. 양 기관이 협약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
2.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1개월이 경과한 경우
3. 단,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협력에 진행중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5조(기타사항)

1.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한 협의에 따르기로 한다.
2. 협약의 증빙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한 후 양 기관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11월 22일



서울특별시
50플러스재단

대표이사 이 경 희



이사장 한 경 희

협약서

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과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(이하 “양 기관”)은 50+세대의 서울시 50+보람일자리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의 진입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양 기관이 행복도시락 나눔지원단 육성을 통해 50+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고 보람일자리 모델을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내용 및 역할)

양 기관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 성실히 협력한다.

1.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
 -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지원
 - 교육진행 및 활동 공간 지원
2.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
 - 참여자 활동관리 및 보수교육 인력지원
 - 프로그램 자문 및 공동운영, 홍보 및 관리

제3조(협약기간)

협약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4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

“양 기관”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은 해지된다.

1. 양 기관이 협약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
2.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1개월이 경과한 경우
3. 단,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협력이 진행중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5조(기타사항)

1.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한 협의에 따르기로 한다.
2. 협약의 증빙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한 후 양 기관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11월 22일



이사장 한 경 희



대표이사 이 경 희